

부르키나파소 (Burkina Faso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임시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, 계약을 맺은 견습생 및 인턴	임시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,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, 계약을 맺은 견습생 및 인턴	적용대상 확대
보험료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5.5% / 11% / 5.5%	5.5% / 11% / 5.5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600,000 CFA francs / 법정 월 최저임금	600,000 CFA francs / 법정 월 최저임금	-
노령연금 수급요건	56~63세 이상(직종별로 상이)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	56~63세 이상(직종별로 상이), 가입기간 180개월 이상	-
노령연금 지급률	보험료 납부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평균월소득의 2%를 납부기간 1년마다 지급	보험료 납부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평균월소득의 2%를 납부기간 1년마다 지급	-
일시금	보험료 납부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평균월소득의 30%를 가입기간 6개월마다 일시금으로 지급	보험료 납부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평균월소득의 30%를 가입기간 6개월마다 일시금으로 지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0년(연금보험)
- 현행법 : 2006년(사회보장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가입 : 임시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,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, 계약을 맺은 견습생 및 인턴
- 임의가입 : 자영자 및 최근 5년 6개월 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당연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(노령 및 유족연금에만 해당)
- 특별제도 : 공무원

- 가입자
 - 소득의 5.5%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30,684 CFA francs)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상한소득은 600,000 CFA francs
- 자영자
 - 신고소득의 11%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30,684 CFA francs)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상한소득은 600,000 CFA francs
 - 보험료는 월 또는 분기납
- 사용자
 - 총임금지급액의 5.5%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30,684 CFA francs, 집단 근로계약을 맺은 민간부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34,664 CFA francs)
 -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상한소득은 600,000 CFA francs
 - 2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, 19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분기별로 납부
- 정부
 - 없음, 공무원이 아닌 공공부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납부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
 -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56세(노동자 및 임의가입자), 58세(사무직 근로자), 60세(감독자, 관리자 및 기술자), 63세(의사 및 대학교수) 이상
 - 납부기간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8일 이상 근로한 월을 의미함
 - 조기연금 :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 및 50세 이상으로 조로증이거나 특정한 조건 하에 실업상태인 경우
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- 아동보조금 : 16세 미만 부양자녀 6명까지 지급(견습생인 경우 19세 미만,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2세 미만). 가입자 은퇴 이전에 태어난 자녀에 한함
 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 - 노령청산금

-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납부기간이 180개월 미만인 자
- 납부기간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8일 이상 근로한 월을 의미함
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

- 장애발생 전 1년 중 6개월을 포함하여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소득활동 능력을 66.7% 이상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판정되고 퇴직연령 미만인 경우. 장애가 산업재해와 무관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적용대상 고용 중이었어야 함
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시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
- 아동보조금 : 16세 미만 부양자녀 6명까지 지급(견습생인 경우 19세 미만,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2세 미만). 자녀는 장애발생 이전 출생하였어야 함
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상시간병수당과 아동보조금을 포함한 동일한 금액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했어야 함
- 유족범위 : 배우자, 16세 미만 자녀(견습생인 경우 19세 미만,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2세 미만)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및 조부모를 포함한 기타 부양가족
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중단
- 유족연금을 받는 고아는 가족수당 수급 불가
- 연금은 상호협정에 따라 해외지급 가능

• 유족청산금

- 사망자의 납부기간이 180개월 미만이고 사망 시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
- 납부기간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8일 이상 근로한 월을 의미함
- 유족범위 : 배우자, 16세 미만 자녀(견습생인 경우 19세 미만,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2세 미만)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 및 조부모를 포함한 기타 부양가족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• 노령연금

-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(임의가입자의 경우 전체 납부기간) 평균월소득의 2%를 납부기간 1년 마다 지급
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(30,684 CFA francs)의 84%

- 월 최고연금액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(임의가입자의 경우 전체 납부기간) 월 평균소득의 80%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
- 아동보조금 : 수급 자격이 있는 자녀 1인당 2,000 CFA franc 지급
- 연금액에 따라 월 단위 또는 분기별로 지급
- 노령청산금
 -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평균월소득의 30%를 가입기간 6개월마다 일시금으로 지급
 - 급여조정 : 제도의 재원에 따라 임금 및 법정최저임금 변동에 맞추어 시행령에 의해 급여를 조정(가장 최근 조정은 2013년에 시행)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
 -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평균월소득의 2%를 납부기간 1년 마다 지급하며, 정상퇴직연령 대비 조기 청구된 1년마다 6개월의 가입 기간을 크레딧 인정
 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(30,684 CFA francs)의 84%
 - 월 최고연금액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간 월 평균소득의 80%
 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액의 50%
 - 아동보조금 : 수급 자격이 있는 자녀 1인당 2,000 CFA franc 지급
 - 장애연금 수급자는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장애급여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음. 전체 금액은 산업재해 장애연금의 100%와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산업재해 장애연금 부분의 합계액임
 - 연금액에 따라 월 단위 또는 분기별로 지급
 - 급여조정 : 제도의 재원에 따라 임금 및 법정최저임금 변동에 맞추어 시행령에 의해 급여를 조정(가장 최근 조정은 2013년에 시행)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를 배우자에게 지급. 배우자가 1명 초과인 경우 균분 지급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를 수급 자격 있는 자녀에게 균분 지급. 수급 가능한 자녀수가 변경되어도 연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. 최저액은 가족수당급여액과 같음
 - 기타부양가족 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를 부모 및 조부모를 포함한 기타 부양가족에게 지급
 - 유족급여의 총합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유족급여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음. 전체

금액은 산업재해 유족연금의 100%와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산업재해 유족연금 부분의 합계액임

- 연금액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
- 유족청산금
 - 배우자청산금 : 사망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청산금의 50%가 유족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수급권 있는 고아가 없는 경우 100%가 지급됨. 미망인이 2명 이상일 경우 균분 지급
 - 고아청산금 : 사망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청산금의 50%가 수급권 있는 고아 사이에 균분 지급되며, 유족배우자가 없는 경우 100% 지급
 - 기타부양가족 청산금 : 수급권 있는 배우자나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에게 수급권이 발생한 노령청산금의 100%가 부모 및 조부모에게 균분 지급. 부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경우 유족청산금은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가 형제자매에게 지급될 수 있음
 - 제도의 재원에 따라 임금 및 법정최저임금 변동에 맞추어 시행령에 의해 급여를 조정 (가장 최근 조정은 2013년에 시행)

7 관리운영기관

- 공공서비스, 노동 및 사회보호부(Ministry of Civil Service, Labor, and Social Protection)
 - 기술적 감독 제공
 - www.fonction-publique.gov.bf
- 재경개발부(Ministry of Economy, Finance, and Development)
 - 재정적 감독 제공
 - www.finances.gov.bf
- 국가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- 3자 위원회 및 위원장의 관리 하에 운영되며,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를 징수함
 - www.cnssbf.org

<2019년 ISSA 자료>